### 국외출장 심사요령

제 정: 2017. 7. 25. 제1차 개정: 2019. 9. 20. 제2차 개정: 2023. 10. 31. 제3차 개정: 2024. 8. 2.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직원의 국외출장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)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, 인사담당 본부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- 1. 인사담당 본부장
- 2. 기획담당 부서장
- 3. 인사담당 부서장
- 4. 감사담당 부서장
- 5. 예산담당 팀장
- 6. 인사담당 팀장
- 7. 외부전문가
- 8. 심사위원 제척시 의장이 지정하는 동일 직위 부서장 또는 팀장
- ② 위원회는 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, 심사의견을 출장부서 및 출장자 앞 제출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심사위원 본인 또는 심사위원과 동일한 부서에 속한 직원의 국외 출장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심사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 하는 임원 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5조(심사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「위임 전결규정」에 따른 출장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기 전에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받 아 출장품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  - 1. 각종 시찰, 견학, 참관 및 단순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 출장
  - 2.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기관(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) 이 부담하는 국외출장
  - 3. 10인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
  - 4. 그 밖에 승인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"외부지원 국외출장 자가점검 체크리스트"를 국외출장 실시에 앞서 인사담당부서 앞 제출해야 한다.
  - 1. 인수, 보상, 사후관리, 신용조사, 국별평가, 국제협력, 감사업무, 복무점검, 국외지사 관리 및 운영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의 경우
  - 2. 외국의 정부,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의 초청에 따른 국제 회의·행사 참석 또는 외국 유관기관들을 초청하는 국제 회의·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출장의 경우
  - 3.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해 우리 정부, 공공기관, 경제단체, 언론사 등이 추진하는 국제 회의·행사 또는 경제사절단 참가 등을 위한 출장의 경우
  - 4. 사장을 수행하는 출장의 경우
- 제6조(심사 절차 및 의사결정) ① 출장자는 출장 시작일 기준 최소 20일 전에 별지의 "국외출장 계획서"를 포함한 심사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<u>별표1의</u> "국외출장 심사기준"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국외출장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기준으로 국외 출장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  - ④ 대면심사가 원칙이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.

- 제7조(관계직원 등의 출석 및 진술)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안건과 관련된 직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8조(의사록)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과 출석위원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제9조(출장계획 및 출장보고) ①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의 작성, 출장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인사관리규정 시행요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
  - ② 심사를 거친 국외출장의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는 공개한다.

#### 부칙(제정)

제1조 (시행일) 이 요령은 2017. 7. 25. 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관련 내규의 폐지) 이 요령 시행에 따라 「국외출장 심사기준」은 폐지한다.

부칙(1)

(시행일) 이 요령은 2019. 9. 20.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)

(시행일) 이 요령은 2023. 10. 31. 부터 시행한다.

<u> 부칙(3)</u>

(시행일) 이 요령은 2024. 8. 2. 부터 시행한다.

### [별표1]

# 국외출장 심사기준

7 H	기시는 이 교기가 다
구분	심사기준
출장의 필요성	<ul> <li>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, 국익 및 공사 업무에 필요한 출장을 우선함</li> <li>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·단일화하고 출장 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</li> <li>*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,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·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</li> </ul>
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	<ul> <li>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·기관으로 제한함</li> <li>* 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,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 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</li> <li>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가한 일이 없도록 유의함</li> <li>중복·집중 방문으로 인하여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함</li> </ul>
출장자의 적합성	<ul> <li>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, 출장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, 출장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함</li> <li>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</li> <li>* 출장 후 상당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선발하도록 함</li> <li>시찰·견학·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(5명 내외)으로 운영되도록 하고, 관광성·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 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</li> <li>* 출장내용 등의 세부 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</li> <li>포상·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을 중심으로 운영함</li> </ul>
출장기간의 적정성	•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도록 함
출장시기의 적시성	•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, 공휴일, 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시기를 선택 하도록 함
출장경비의 적정성	• 출장경비는 「 <b>여비규정」</b> 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·지급함

#### [별표2]

### 외부지원 국외출장 자가점검 체크리스트

#### 1. 출장 개요

출장목적					
출장기간					
출 장 지					
출 장 자	소 =	속	직급/직위	성 명	출장 관련 담당업무
출생사					

### 2. 자가점검 체크리스트

연번	체크리스트 항목	Yes	No
1	외부지원기관에서 출장자를 특정하지 않음		
1-1	출장자를 특정한 경우,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		
2	출장목적 및 출장자의 역할이 명확함		
3	출장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외유성 일정이 없음		
4	외부지원기관의 출장요청 및 비용부담 동의 문서(또는 서신)를 수취함		
4-1	문서(또는 서신)를 통해, 지원경비(항공임, 숙박비 등)가 타 출장기관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됨을 확인함		
5	「여비규정」등 공사의 여비 관련 내규를 준수함		
6	출장경비의 환급 또는 정산 절차가 있을 경우, 출장자가 직접 외부지원기관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지 않고 공사 계좌로 수령 예정임		
7	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간부급 직원 동행 없음		

※ 각 항목에 대하여 자가점검 후,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 앞 국외 출장 실시 전에 제출

- 증빙자료 : 외부지원기관의 출장요청 및 비용부담 동의 문서(또는 서신) 등

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출장자 (인)

[별지]

### 국외출장 계획서

### 1. 개요

출장목적						
출장동기 및 배경						
출장기간		. ~		.( 일간)		
여 행 국						
		보   지근   지 년	서머	해당 출장시	여 행 경 비	
	소속		담당업무	금 액	부담기관	
여 행 자						
	계					
동행기관명 및 인원						

### 2. 일정

월일시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업무수행내용	면담예정인물 (직책포함)
	서울				
		서울			

※ 일정은 **시간대별로 작성**하며,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

## 3. 경비 및 관련 예산

성 명	금액 계	항공운임 (Class)	체재비	참가비	기 타
계					

관련 예산과목 (국외여비, 연수비 등)	총 편성액	기 집행 후 잔액 (해당 여비 집행전)

### 4. 사전 준비 내역

과거 출장보고 관련 자료의	L서의 검토 및 사전 분석 등	방문기관과의	사전협의 경과
자료명(일자)	자료 내용	방문기관에서 수집할 자료목록	질의할 내용

## 5. 출장 효과 및 결과 활용계획 등